

별지 6. 사전우편투표용지 봉합용 소봉투(황색)

(앞면)

투표용지 재중 (사전우편투표를 신청한 선거권자의 투표)

투표용지 기표란에 ○로 표시한 후 이 봉투에 넣어 반드시 봉합해 주십시오.

봉투 안에 투표용지만 넣어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와 봉투 등에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습니다.
봉합된 봉투는 절취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붙인 위임장과 함께 협회 회신용 중봉투(흰색)에
함께 넣어 협회 사무국으로 반드시 등기우편(우편료는 선거권자 본인 부담)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재자사전투표의 회신은 . . . () 18:00까지 협회 사무국에 등기우편으로 도달해야만
유효한 투표로 인정됩니다.

대한공증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뒷면)

20 년도 제 대 협회장(부협회장) 및 감사 선거 투표용지 봉합용 봉투

사전우편투표 봉투